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코코이찌방야

정보공개서

(주)농심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년 4월 25일

(주) 농 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담당부서: 외식사업팀

전화: 02) 820 - 7041 팩스: 02) 810 - 8782 이메일: 2013691@nongshim.com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 2] 코코이찌방야 물품 구입 현황
- [별첨 3] 코코이찌방야 판매 상품·용역 및 권장가격
- [별첨 4] 코코이찌방야 매장 현황
- [별첨 5] 판매 메뉴 현황
- [별첨 6] 가맹점 체크리스트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농심	코코이찌방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1965.9.18	1965.9.18	이병학	02-820-7041	02-810-8782
	법인등록번호	110111-0057574	사업자등록번호	118-81-0391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회장	신동원	코코이찌방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학	02-820-7041	02-810-8782
대표이사 사장	이병학	코코이찌방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학	02-820-7041	02-810-8782
부사장	황청용	코코이찌방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학	02-820-7041	02-810-8782
상 무	김성환	코코이찌방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병학	02-820-7041	02-810-8782
계열회사	(주)메가마트	판도라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신동익	02-820-7041	02-810-8782
		법인등록번호	110111-0222557	사업자등록번호	119-81-0085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코코이찌방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코코이찌방야	코코(ココ)는 ‘여기’, 이찌방(壺番, いちばん)은 ‘최고’, 야(屋, や)는 ‘집, 가게’란 뜻으로, ‘여기가 최고의 집’, 즉 최고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레하우스란 뜻
상 호	코코이찌방야 00점	
상 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035631-0000
		국제 등록번호: 1177255(2013.05.16)
광 고	해당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544,772	509,753	2,035,019	2,102,582	62,341	71,120
2022 년	2,687,384	579,151	2,108,232	2,395,960	63,302	77,166
2023 년	2,838,340	664,501	2,173,838	2,605,366	124,300	115,021

그 근거 자료는 [별첨 1]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 사업 관련 임원	신동원	회장	2021.7~현재	(주)농심 회장	경영총괄
	이병학	부사장	2022.1~현재	(주)농심 대표이사 (사장)	경영총괄
	신병일	사외이사	2019.3~현재	(주)농심 사외이사	감사위원
	변동걸	사외이사	2021.3~현재	(주)농심 사외이사	감사위원
	여인홍	사외이사	2021.3~현재	(주)농심 사외이사	감사위원
	김지연	사외이사	2021.3~현재	(주)농심 사외이사	감사위원
	조용철	부사장	2022.1~현재	(주)농심 부사장	마켓 부문장
	황청용	부사장	2021.12~현재	(주)농심 전무	경영관리부문장
	이용재	전무	2019.1~현재	(주)농심 전무	국제사업부문장
	손태현	전무	2020.1~현재	(주)농심 전무	SCM부문장
	정성욱	전무	2022.01~현재	(주)농심 전무	R&D부문장
	유창열	상무	2021.12~현재	(주)농심 상무	생산부문장
			2019.7~2021.11		구미공장장
			2017.12~2019.6		부산공장장
			2016.12~2017.11		죽산공장장
	김보규	상무	2017.12~현재	(주)농심 상무	경영기획실장
			2016.1~2017.11		경영기획팀장
	박윤희	상무	2024.1~현재	(주)농심 상무	GBOT팀장
			2022.4~2023.12		GBO T/F팀장
	윤영우	상무	2020.12~현재	(주)농심 상무	물류본부장
			2016.12~2020.11		영업기획실장
	박태영	상무	2023.12~현재	(주)농심 상무	부산공장장
			2018.1~2023.11		안성공장장
	김종준	상무	2020.12~현재	(주)농심 상무	상품마케팅실장
			2019.12~2020.11		면마케팅실장
			2018.1~2019.11		제품마케팅실장
	김기찬	상무	2021.07~현재	(주)농심 상무	경영지원실장
			2018.1~2021.06		비서팀장
	김상훈	상무	2021.12~현재	(주)농심 상무	구미공장장

		2019.1~2021.11		아산공장장
문선기	상무	2021.12~현재	(주)농심 상무	서부영업본부장
		2020.01~2021.11		충청영업본부장
김종우	상무	2021.07~현재	(주)농심 상무	재경실장
		2020.01~2021.06		경영지원실장
윤상혁	상무	2022.12~현재	(주)농심 상무	면개발실장
		2020.01~2022.11		상품개발실장
문승현	상무	2020.01~현재	(주)농심 상무	인재경영실장
조영수	상무	2021.01~현재	(주)농심 상무	채널본부장
진병욱	상무	2021.01~현재	(주)농심 상무	해외영업본부장
김광현	상무	2022.01~현재	(주)농심 상무	제품마케팅실장
조성우	상무	2022.01~현재	(주)농심 상무	이커머스본부장
장수근	상무	2022.01~현재	(주)농심 상무	영남영업1본부장
신상열	상무	2024.01~현재	(주)농심 상무	미래사업실장
		2022.01~2023.12		구매실장
김성환	상무	2022.01~현재	(주)농심 상무	외식사업팀장
박 훈	상무	2022.10~현재	(주)농심 상무	호텔사업부장
김진구	상무	2023.12~현재	(주)농심 상무	안성공장장
		2023.01~2023.11		아산공장장
권혁호	상무	2023.01~현재	(주)농심 상무	영업기획실장
오준성	상무	2023.01~현재	(주)농심 상무	충청영업본부장
안영진	상무	2023.01~현재	(주)농심 상무	경영정보실장
심규철	상무	2023.01~현재	(주)농심 상무	면마케팅실장
김상미	상무	2023.11~현재	(주)농심 상무	디자인실장
손석준	상무	2024.01~현재	(주)농심 상무	연구개발실장
박현우	상무	2023.08~현재	(주)농심 상무	기능식품사업 책임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5	4	5,600
---------------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카레하우스 코코이찌방야	상표권 (국내독점 사용)	1995.1.17. 출원 1997.4.22. 등록	출원:41-1995- 0000324 등록:41-0035631- 0000	가부시키 가이샤 이찌방야	2027.4.22. (2027.9.13.)

※ 당사는 가부시키가이샤이찌방야로부터 국내독점상표권 사용에 대해 상표권제약을 체결하고, 상기 상표에 대한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부시키가이샤이찌방야 정보]

명칭	대표이사	설립일	자본금	본사주소	사업영역
(주)이찌방야	쿠즈하라 마모루	1982.7.1	15억327만엔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 미쓰이 6정목 12-23	외식업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본부의 [코코이찌방야] 가맹사업 현황

1. [코코이찌방야]를 시작한 날: 2010년 12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08년 3월 10일)

2. [코코이찌방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주)농심	코코이찌방야	이병학	2010.12.11~현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	--------	-----	---------------	----------------------------

3. [코코이찌방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코코이찌방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양식	카레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코코이찌방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전체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0	15	15	30	16	14	36	20	16
서울	17	7	10	17	8	9	20	10	10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1	1	—	2	2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0	5	5	12	7	5	14	8	6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코코이찌방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3	3	—	1	—	15
2022	15	4	3	—	—	16

2023	16	4	-	-	-	20
------	----	---	---	---	---	----

6. [코코이찌방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 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 관계인 (계열 회사)	(주)메가마트	판도라	20110100499 (자진취소)	기타 도소매	0 / 5	0 / 0	0 / 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코코이찌방야] 가맹점사업자의 2023년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2023년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20	443,604	16,607	962,916	34,437	159,046	5,925	
서울	10	534,777	22,730	962,916	34,437	214,357	12,818	9개(6개월 미만제외)
부산		해당없음						
대구		해당없음						
인천	2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해당없음						
대전		해당없음						
울산		해당없음						
세종		해당없음						
경기	8	360,390	12,557	695,991	18,977	159,986	5,925	7개(6개월 미만제외)
강원		해당없음						
충북		해당없음						
충남		해당없음						
전북		해당없음						
전남		해당없음						

경북		해당없음						
경남		해당없음						
제주		해당없음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 # 기재된 가맹점매출액은 점포의 휴무일, 타임별(소형매장포함)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였습니다.
- #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가맹점의 영업 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가맹점의 매출액은 산정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8. 코코이찌방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1,556일 (약 4년 3개월)

가맹점 영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기산일을 양수전 최초 가맹점 계약일부터 산정했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본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코코이찌방야와 관련하여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31쪽을 참고하십시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비 고
			(단위:원, 부가세 미포함)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 고	소계		11,801,691	11,801,691		
	(비공개)	2023.0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23.0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2023.01 ~ 2023.12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 촉	소 계		1,446,000	1,446,000		
	(비공개)	2023.01 ~ 2023.12	1,446,000	1,446,000		(비공개)

총 합계	13,247,691	13,247,691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신대방동 지점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02-820-887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농심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코코이찌방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부가세 포함)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입비	11,000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최초 계약 기간 내에 본사 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 우 미 경과일수에 따라 일 괄 계산해서 반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

해당내용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6,500
가입비	11,000
교육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제외)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93,100	4,655	—	—	66㎡ 기준
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	60,500	3,025	업체협의 후 결정	공사 前 계약 취소	매장 형태에 따라 상이
주방기기		23,500	1,175			

POS시스템	(비공개)	2,100	105	입고일		
초도물품/식재	(주)농심	7,000	350	입고 2일前	물품 미공급 시	매장 규모에 따라 상이

별도공사 내역

: 간판/사인물, 가구/의탁자, 외부공사, 소방공사, 전기 및 가스 증설공사, 화장실공사, 덕트공사, 냉/난방공사, 방풍공사, 스텝실 가구 外 매장 상황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위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제시된 금액은 점포구조 및 공사기간, 물가변동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 실측 후 공지해드립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02-820-7041)	가맹상담 → 시장 분석 → 최적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동의 시 신규 출점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당사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	
종업원	일반음식점 근무 가능한 자	자율 채용 서비스, 청결, 품위를 유지할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코코이찌방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매장 규모에 따라 물품 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가맹금 분납 제도

당사는 가맹비 분납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광고/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분기별 명세서 수령		전국/지역단위 공동 광고
POS 사용료	(비공개)	월 30		개별 계약에 따름		
레이블 오더기 및 키오스크	(비공개)	계약별상이		개별 계약에 따름		가맹사업자 선택
점포환경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15%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첨부파일에 부가세 여부 포함)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단위 : 부가세 미포함)	37,001,317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8.34%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전년도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

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코코이찌방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금 오백오십만원(5,500,000원/부가세 포함)을 가맹본부에 납부하고 매장 오픈 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 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코코이찌방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아래

와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별첨 2, 3의 세부내용 참조>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코코이찌방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코코이찌방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및조건	위반시책임	비고
[별첨3] 코코이찌방야 판매 상품·용역 및 권장 가격	[별첨3]에 기재된 이 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위반: 구두경고 2회위반: 서면시정요구 3회이상위반: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사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별첨 3] “코코이찌방야 판매 상품·용역 및 권장가격” 참조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매장 중심으로 500m 범위 이내 1개점포 기준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 지역 표시함	가능	- 상권 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 선호 변화, 경쟁 브랜드 입점 등의 사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당사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 집객시설 내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이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대형유통 집객시설이 들어설 지역 내에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있을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의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코코이찌방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코코이찌방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 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39.9%	60.1%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코코이찌방야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최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 만료 전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 종료를 통지해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가맹본부의 경영 지도나 방침을 위반한 경우	제31조 1항 제41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인정하지 않은 상품 및 원부재료를 취급하여 판매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 보수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2항, 5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 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귀하는 당사에 대하여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당사는 승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하게 되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가맹점운영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합니다.

양수인에 대하여는 가맹금이 면제됩니다. 단,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서	모든 권리의무	양도 절차와 동일	교육 수료 및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교육비 지급 (오백오십만원)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귀하가 코코이찌방아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카레 등을 이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예)카레라이스, 카레우동, 하이라이스, 오프라이스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 조사 포함, 약 30일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문의 (주)농심

*카레라이스에 육류, 해산물, 튀김, 채소 등을 비롯한 토핑을 추가하는 업종	-> 완료	외식사업팀 (02-820-7041)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코코이찌방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2:00	연중무휴	문의:02-820-70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원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수를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月매출액 (부가세 미포함)	원장 종업원수(명)		
	직원	아르바이트	합계
20,000천원	2	2	4
30,000천원	2	3	5
40,000천원	3	3	6
50,000천원	4	4	8
60,000천원	4	5	9
70,000천원	5	6	11
80,000천원	5	7	12

매장 사정에 따라 원장 종업원 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서 직접 근무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부재시에는 사전에 미리 가맹본부에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슈퍼바이저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관리 및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매장 운영에 대한 점검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 영업부서에 보관하게 됩니다.

[별첨 6] “가맹점 체크 리스트” 참조

관리/감독 내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접객 서비스	수퍼바이저 방문	정기적 또는 수시 체크	본사 가맹 관리팀
메뉴 품질	-> 항목별 확인		
오퍼레이션 지도	-> 관리표 작성		
위생관리	-> 가맹점주 확인		
유지보수 관리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경품제공, 시식회, 이벤트 등과 같은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의 경우 전 가맹점의 매출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전체 가맹점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기초로 양자간 합의에 의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통지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형식과 자료에 관하여 당사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 비밀이 담긴 관제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자가 가맹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소정의 해약금을 지불하며 해약금은 직전 3개월 월 평균 본사 식자재 구입 금액의 20% X 남은 계약 월 수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계약 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0일 내외	IV.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70~6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65~60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60~5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 기준 2주 후)	D-55	
가맹금 예치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D-55(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 50~45(5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5~35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35(3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액의 40%)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집기·장비교체비용	◦ 가맹점사업자의 투자금액(임차료 등),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50%~10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50~80% -단, 집기·장비교체비용은 20% 부담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코코이찌방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매장 사정에 따라 교육 기간은 오픈 전 3주에서 6주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코코이찌방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일	내용	참석대상	비고
현장 교육 ※인테리어 공사기간	3~6주	매뉴얼 및 서비스 교육	경영주 / 직원	* 직원유니폼은 본사에서 구입
추가 교육	비정기적	오픈 이후 신입 직원 구인 시 별도 교육	점포 신입 직원	* 현장 교육 시 점주 및 직원 전원은 보건증 준비

- 모든 교육 기간 중 가맹점 직원들의 인건비는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당사 직영점 현장교육 기간 중 발생하는 식비는 본사 부담입니다.
(본사 및 가맹점 부담 내용 사전 공지)
- 가맹본부에서 주최하는 외부행사, 외부교육, 해외연수 등은 상황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 19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직원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또는 오픈을 위한 교육이 본사가 판단해서 충족이 되지 않을 시에는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 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 2) 재계약 진행 시 가맹점 평가요소에 반영되며 이수 기준 미달 시 가맹계약서상 중대한 위반사유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순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보라매점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성무관 2 층
2	서울	롯데몰 김포공항점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방화동)롯데몰 김포공항 지하 2 층
3	경기	롯데백화점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호계동)롯데백화점 평촌점 7 층
4	경기	부천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 번길 24 심곡동 1 층
5	서울	합정역 메세나폴리스점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서교동) 메세나폴리스 2 층
6	서울	목동현대 41 타워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목동) 현대 41 타워 2 층
7	서울	상암 MBC 신사옥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상암동)MBC 신사옥 지하 1 층
8	경기	롯데백화점 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24(서둔동)롯데백화점 수원점 7 층
9	경기	롯데몰 광명점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7(일직동) 롯데아울렛 광명점 5 층
10	서울	건대스타시티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2 자양동 227-7 스타시티쇼핑몰 지하 1 층
11	경기	롯데아울렛 수원광고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8 롯데아울렛 광고점 3 층
12	서울	대학로점	서울 종로구 동승길 136 2 층
13	서울	종로타워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1 종로타워
14	서울	을지로시그니처타워점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 지하 1 층
15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점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지하 1 층
16	경기	스타필드 안성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3930-39 스타필드안성2층 잇토피아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8년 3개월	23년 말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821,308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외식사업팀(02-820-704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cocoichibanya.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의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2023년 3월 14일자로 등록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코코이찌방야 물품 구입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별첨3]코코이찌방야 판매 상품·용역 및 권장가격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기본카레	7,900	홈페이지 및 메뉴북	카레
로스까스카레	11,700	"	카레
코코일푼돈카츠카레	14,700	"	카레
치킨까스카레	12,100	"	카레
비프샤브카레	11,500	"	카레
카라아게카레	13,100	"	카레
닭가슴살스테이크카레	11,700	"	카레
치즈인 로스카레	13,100	"	카레
라이트야채치킨카레	12,200	"	카레
야채카레	10,700	"	카레
토마토아스파라거스카레	10,700	"	카레
기본오무카레	10,000	"	오무
치킨크림오무	14,200	"	오무
카라아게오무	15,200	"	오무
로스까스오무	13,800	"	오무
토마토아스파라거스오무	12,800	"	오무
하야시오무	13,100	"	오무
알새우비프샤브오무	16,600		오무
버섯크림오무	13,200		오무
함박스테이크오무	13,700		오무
히레카츠오무	16,800		오무
라이트야채치킨오무	14,300		오무
비프카레우동	12,200	"	우동
치킨카레우동	11,800	"	우동
해물크림카레우동	12,000	"	우동
카라아게&비프카레우동	14,800	"	우동
돈까스 키즈세트(순한맛)	8,500	"	키즈
반반치킨콤보	12,600	"	기타
카라아게&토마토아스파라거스카레	15,900		믹스
일푼돈카츠&하프비프샤브카레	14,700		믹스
라이트야채치킨&하프카라아게카레	14,800		믹스
알새우&비프샤브카레	14,500		믹스
트리플하프믹스카레	14,300		믹스
트리플야채믹스카레	12,600		믹스
콜라	2,500	"	음료

사이다	2,500	"	음료
웰치스(탄산포도맛)	2,500	"	음료
카프리썬	1,000	"	음료
백산수	1,000	"	음료
치킨까스	4,200	"	토핑
크림고로케	3,800	"	토핑
닭가슴살스테이크	3,800	"	토핑
카라아게	5,200	"	토핑
새우까스	3,600	"	토핑
소시지	3,800	"	토핑
로스까스	3,800	"	토핑
일품돈카츠	5,000	"	토핑
치즈인로스까스	5,200	"	토핑
함박스테이크	3,700	"	토핑
스피니치	1,500	"	토핑
눈꽃치즈	2,200	"	토핑
알새우	3,000	"	토핑
야채	2,800	"	토핑
토마토아스파라거스	2,800	"	토핑
닭가슴살	3,300	"	토핑
비프샤브	3,600	"	토핑
라이트야채치킨	4,300	"	토핑
치킨크림	4,200	"	토핑
버섯크림	3,200	"	토핑
하프왕새우튀김	2,300	"	토핑
하프크림고로케	1,900	"	토핑
하프카라아게	2,600	"	토핑
하프소시지	1,900	"	토핑
아스파라거스	1,800		토핑
치즈볼	2,000		기타
연근커틀렛	2,800		기타
튀김두부	2,400		기타
통다리살	4,900		기타
미니샐러드	1,000		기타
감자튀김	2,000		기타

[별첨4]코코이찌방야 매장현황

홈페이지(<http://www.cocoichibanya.co.kr>)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별첨5]판매 메뉴 현황

홈페이지(<http://www.cocoichibanya.co.kr>)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별첨6] 가맹점체크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